

[별표1]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사업 조사평가표 배점기준

[1] 공통평가항목 (70점)

(앞쪽)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비고												
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 (20점)	지원 실적 비율 0%	2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”이란, 보조금 지원 상한액에 대한 당해 연도를 포함하여 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의 백분율을 말함 지원받은 실적이 없거나 적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: $\text{최근 5년간 지원 실적 비율} = \frac{\text{최근 5년간 지원받은 보조금 누계}}{\text{보조금 지원 상한액}} \times 100$ 												
	지원 실적 비율 20% 미만	18													
	지원 실적 비율 40% 미만	16													
	지원 실적 비율 60% 미만	14													
	지원 실적 비율 80% 미만	12													
준공 후 경과 연수 (15점)	준공 후 25년 이상 경과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준공 후 경과 연수”란, 공동주택 지원사업 종합계획 공고일자를 기준으로 당해 공동주택의 준공 후 경과 연수를 말함 공동주택 준공 후 경과 연수가 오래된 노후한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<참고> 2016. 1. 1.기준 준공 경과 연수표 <table border="1" style="margin-left: 20px;"> <thead> <tr> <th>준공일자</th> <th>준공 후 경과 연수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1991. 01 .01. 이전</td> <td>25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1996. 01 .01. 이전</td> <td>20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2001. 01 .01. 이전</td> <td>15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2005. 01 .01. 이전</td> <td>11년 이상</td> </tr> <tr> <td>2009. 01 .01. 이전</td> <td>7년 이상</td> </tr> </tbody> </table>	준공일자	준공 후 경과 연수	1991. 01 .01. 이전	25년 이상	1996. 01 .01. 이전	20년 이상	2001. 01 .01. 이전	15년 이상	2005. 01 .01. 이전	11년 이상	2009. 01 .01. 이전	7년 이상
	준공일자	준공 후 경과 연수													
	1991. 01 .01. 이전	25년 이상													
	1996. 01 .01. 이전	20년 이상													
	2001. 01 .01. 이전	15년 이상													
2005. 01 .01. 이전	11년 이상														
2009. 01 .01. 이전	7년 이상														
준공 후 20년 이상 경과	13														
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	11														
준공 후 11년 이상 경과	9														
준공 후 7년 이상 경과	7														
자체부담금 비율 (15점)	자체부담금 비율 80%이상	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자체부담금”이란,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는 사업비로서, 총 사업비에서 구청에서 지원받는 보조금을 뺀 금액 “자체부담금 비율”이란, 총사업비에 대한 자체부담금의 백분율 총사업비에서 자체부담금 비중이 높을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: 자체부담금 비율 $= \frac{\text{자체부담금}}{\text{총사업비}} \times 100 = \frac{\text{총사업비} - \text{지원신청금액}}{\text{총사업비}} \times 100$ 												
	자체부담금 비율 60%이상	13													
	자체부담금 비율 40%이상	11													
	자체부담금 비율 20%이상	9													
	자체부담금 비율 20%미만	7													
신청주택 세대수 (10점)	30세대 미만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신청주택 세대수”란, 건축물대장에 따른 동일 주택건설대지 상 모든 동의 세대수 합계를 말함 세대수가 많은 대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장기수선충당금 등 자체 재원 확보가 용이하게 때문에, 세대수가 적은 소규모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												
	30세대 이상 100세대 미만	9													
	100세대 이상 150세대 미만	8													
	150세대 이상 300세대 미만	7													
	300세대 이상 500세대 미만	6													
	500세대 이상	5													
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 (10점)	세대비율 100%	10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“국민주택규모”란, 공동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이 1세대당 85㎡ 이하인 규모를 말함 “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”란, 공동주택의 전체 세대수에 대한 국민주택규모의 세대수 백분율을 말함 국민주택규모 이하인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일수록 배점이 높음 산정식 : $\text{국민주택규모 세대비율} = \frac{\text{국민주택규모 세대수}}{\text{전체 세대수}} \times 100$ 												
	세대비율 70% 이상	9													
	세대비율 50% 이상	8													
	세대비율 30% 이상	7													
	세대비율 30% 미만	6													

[2] 가점(+)부여 항목 (30점)

(뒷쪽)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비고	
승강기 교체사업 (4점)	150세대 이하 공동주택의 노후 승강기 교체 사업	4	○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금액이 적은 150세대 이하의 소규모 공동주택에서 노후 승강기를 교체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	
입주민 안전 직결사업 (4점)	옹벽, 담장 등 구조물 붕괴에 따른 입주민 안전에 직결되는 사업	4	○ 옹벽, 담장 등 구조물 붕괴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입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	
에너지절감 실천사업 (4점)	LED전등, 태양광시설 설치사업	4	○ 공용시설에 LED전등을 교체 설치하거나 태양광을 이용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등 에너지절감 실천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	
주차시설 확충사업 (4점)	노후 공동주택의 주차시설 확충 사업	4	○ 1994. 12. 30.이전에 사업계획 승인된 공동주택 중, 어린이 놀이시설, 조경시설 등의 1/2 범위 범위에서 주차장을 확충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 ○ 단, 북구 교통행정과 "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"과 중복지원 불가 (☎ 교통행정과 241-7964)	
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 (4점)	관련법 개정에 따른 필요사업	4	○ 공동주택 공용시설의 유지보수 등과 관련된 법령의 개정에 따라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하는 사업 추진 시 가점부여	
각종 시책사업 참여 공동주택 (10점)	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	2	○ 『노사민정이 함께하는 행복한 아파트 프로젝트 사업』 참여 단지 가점부여 (☎ 창조경제과 241-7724)	
	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	2	○ 『탄소포인트제 단지가입제』 참여 단지 가점 부여 (☎ 시 환경정책과 229-3133, 환경위생과 241-7764)	
	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	2	○ 『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세대별 종량제』 시범 사업 참여 단지 가점부여 (☎ 환경미화과 241-7813)	
	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	20% 초과	2	○ 전년도 『음식물쓰레기 감량실적』 이 있는 단지 가점부여 (☎ 환경미화과 241-7813)
		10%~20%	1.5	
10% 이하		1		
공동주택 관계자 교육 참석	2	○ 전년도 『공동주택 관계자 교육』 참석 단지 가점부여 (☎ 건축주택과 241-8024)		

[3] 감점(-)부여 항목 (5점)

평가항목	평가기준	배점	비고	
행정조치 공동주택 (5점)	행정조치	과태료 부과 고발	5	○ 당해연도 포함 최근 3년간 주택법령 위반 및 분쟁 등으로 구분에 따른 행정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는 단지에 감점부여 ○ 해당하는 항목의 최고점을 부여하며 중복해서 부여하지 않음 (☎ 건축주택과 241-8024)
		시정명령	4	
		행정지도 2회 이상	3	
		행정지도 1회	2	

[4] 총점계산

총점	[1]공통평가항목 소계 + [2]가점(+)부여항목 소계 + [3]감점(-)부여항목 소계
----	--